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1. 30 선고 2019가단12895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

담당변호사 권성환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9. 11. 21

판결 선고 2020. 1. 30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6. 2. 1. 접수 제11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갑 제2호증의 3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별지 목록 기재

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이 원래 원고의 소유였으나, 2016. 2. 1.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.

2. 원고는 당초 피고가 어머니인 원고를 부양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고,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로써 이를 해제한다고 주장한다.

3.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.

4. 이에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유정

별지